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심의 · 의결

안건번호 제2017 - 36 - 223호

안 건 명 개인정보 유출신고 사업자 등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이사

의 결 일 2017. 10. 12.

주 문

1. 피심인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등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지 게시,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제1항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그 실시 결과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3,000,000원



-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 라.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 제53조제1항 및 제54조에 따라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

이 유

I. 기초 사실

피심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온라인 등으로 광고 마케팅을 하는 웹사이트 ()를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고, 피심인의 최근 3년간 매출액은 다음과 같다.

〈 피심인 일반 현황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평 균
매출액(단위 : 백만원)				

※ 자료 출처 :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

II.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대상

방송통신위원회는 피심인이 웹사이트 양도 시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이전 사실 통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통보(2017. 2. 8.)받아 피심인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에 대한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 조사(조사기간 : 2017. 5. 26., 2017. 6. 19.)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017. 5. 26.

가. 정보통신망법 제26조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등으로 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미리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1호)’,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이하 “영업양수자등”이라 한다)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주소·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2호)’,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3호)’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은 “영업의 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시의 통지는 전자우편·서면·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또는 영업양수자 등이 과실 없이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최소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정보통신망법 제64조제3항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공무원에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영업의 양수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행위{정보통신망법 제26조(영업의 양수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피심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이전하면서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제1호),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주소·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제2호),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제3호)의 사항 모두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하고, 전자우편·서면·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미리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며,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최소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정보통신망법 제26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제2항을 위반하였다.

〈참고〉 피심인의 위반사항

사업자 명	위반 내용	법령 근거		
		법률	시행령	세부내용(고시 등)
	영업 양수	§26①	§11①,②	영업의 양수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행위

IV. 시정조치 명령

1. 시정명령

피심인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등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지 게시,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시정명령 이행결과의 보고

피심인은 제1항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그 실시 결과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6조제1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6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별표 9] 및 「개인정보보호 의무위반자 과태료 부과 등 처리지침」(이하 ‘처리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 9]와 ‘처리지침’ 제7조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이번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첫 번째에 해당하여 1회 위반 과태료인 600만원을 적용한다.

〈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 〉

위반사항	근거법령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만원)		
		1회	2회	3회 이상
○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법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개인정보의 이전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 제2항제2호	600	1,200	2,000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처리지침’ 제9조는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인 경우, ▲위반행위가 2개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위반 행위자의 사업 규모, 위반의 동기·정도,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리지침’ 제7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할 때,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6조제1항 위반 행위에 대해서 특별히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과태료를 가중하지 않는다.

2) (과태료의 감경) ‘처리지침’ 제8조는 ▲위반행위의 결과가 과실에 의한 경우, ▲위반행위의 결과가 경미한 경우, ▲위 두 가지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위반 행위자의 사업 규모, 위반의 동기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리지침’ 제7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까지 감경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할 때, 피심인의 사업규모가 소기업*인 점 등을 감안하여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 위반 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의 50%를 감경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업종별 기준에 따라 평균 매출액 50억원 이하인 사업자(전자상거래, 방송통신업 등)

< 과태료 산출내역 >

위반조문	기준금액	과태료 가중	과태료 감경	최종 과태료
§26①	600만원	없음	300	300만원
계				300만원

다. 최종 과태료

이에 따라,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6조제1항 위반에 대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V. 결론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4조제4항 및 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 또는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위원장 이 효 성



부위원장 허 욱



위원 김 석 진



위원 표 철 수



위원 고 삼 석

